

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8-2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경기도 「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」에 의거 1998.4.16.부터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는 「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,
-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,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,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, 제5조)
-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있음(3건, 반영) - 붙임4

- 입법예고 : 2019. 8. 21. ~ 2019. 9. 9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등 : 붙임5

< 부임 1 >

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,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등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여성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유지 지원과 시민의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설치) 시장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안산시(이하 “시”이라 한다)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, 고충상담지원 사업
2. 일·생활 균형 지원사업
3. 남녀고용평등 교육사업
4.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사업
5. 여성근로자 복지 및 가족복지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·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8조(위탁계약의 해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
-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.

제9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여성가족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과장 김 제 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팀장 김 민 정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민 정 (행정 2213)